



		대법원 2026. 1. 8. 선고 2025후10234 등록무효(디) (사) 상고기간
제목	등록디자인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인지 문제된 사건	
판시사항	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'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'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	
판결이유	<p>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(이하 '통상의 디자이너'라고 한다)이 같은 조 제1항 제1호·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(이하 '공지디자인'이라고 한다)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거나,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·모양·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(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)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.</p> <p>위 규정에 따라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하기 위해서는, 공지디자인의 형상·모양·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·모양·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,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·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,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·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이어야 한다(대법원 2018. 9. 28. 선고 2016다219150 판결 등 참조).</p>	

(1) 본 판례의 의의 및 취지

-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'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'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한 판례.
- 공지디자인 또는 복수 선행디자인의 단순한 결합 가능성만으로 곧바로 용이창작을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함
-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일부 공통점을 가지더라도, 전체적으로 상이한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용이창작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.
- 선행디자인 결합 주장에 대해 사후적·추상적 판단을 경계하고,
통상의 디자이너 관점에서의 실질적 창작 용이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시사.

(2) 사안개요

- 당사자
 - 원고(상고인): 주식회사 ○○○
 - 피고(피상고인): △△△ 주식회사
- 사건의 경과
 - 원고는 피고의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여 등록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
 -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함
 -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됨
 - 원고가 다시 상고하여 대법원에 이르게 됨
- 쟁점
 -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1, 3, 17의 결합에 의해
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

(3) 법리

① 쟁점이 된 법적 쟁점

-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
'통상의 디자이너가 공지디자인 또는 그 결합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'에 해당하는지 여부

② 쟁점과 관련된 사실관계 (판례 원문 반영)

-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7과 **일부 공통점을 가짐**
- 그러나 선행디자인 17과는 **여러 차이점이 존재함**
- 원고는 선행디자인 17에 선행디자인 1 또는 3을 결합하면
통상의 디자이너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주장함
- 피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들과 **전체적으로 상이한 미감적 가치를 가진다고 주장함**

③ 적용된 판단기준 (법리 기준)

-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의 해석 기준
 -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**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**이어야 함
 - 공지디자인의 형상·모양·색채 또는 그 결합을 **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한 경우**
 - 일부 변형이 있더라도,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**상업적·기능적 변형**에 불과한 경우
 -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**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**으로 변경·조합하거나 전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
 - 단순히 선행디자인과 공통점이 존재하거나, 사후적으로 결합 가능성이 도출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함
 - 전체적 미감과 통상의 디자이너 관점에서의 창작 용이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**
- (대법원 2018. 9. 28. 선고 2016다219150 판결 등 참조)

(4) 특허법원(원심법원) 판단

-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7과 일부 공통점은 있으나,
- 선행디자인 17과의 차이점들로 인하여 **전체적으로 상이한 미감적 가치를 가짐**
-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17의 형상 등을 **그대로 모방하였거나**,
이를 **상업적·기능적으로 변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음**
- 각각 독특한 외관적 특징을 가지는 선행디자인 1, 3, 17을
통상의 디자이너가 결합하거나 변형하여
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은 미감을 주는 디자인을
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
-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
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7에 선행디자인 1 또는 3을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음

(5) 대법원 판단

-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기존 법리를 실시함
-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라 살펴보면,
 - 원심의 판단에는



-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대비를 통한 창작용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
-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도 없으며
-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도 없고
-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잘못도 없음
-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음

(6) 결론

-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
-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용이창작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음

(7) 한줄 키워드 요약

- 복수 선행디자인의 결합 가능성이 있더라도, 전체적으로 상이한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면 용이창작으로 볼 수 없다

(8) 추가 정리 포인트

- 용이창작 판단은 선행디자인의 개별적 유사성 판단과 구별되는 독립적 판단 단계임
- '결합하면 만들 수 있다'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,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결합·변형할 수 있는지가 핵심.